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74
----------	-----

제출년월일 : 2021.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목적, 적용범위, 설립(안 제1조 ~ 제3조)
- 나. 재단법인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등(안 제4조, 제6조)
- 다. 재단법인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안 제7조 ~ 제9조)
- 라. 재단법인의 직원채용, 운영재원(안 제10조, 제11조)
- 마. 재단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제14조,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16억 원 반영되었음

2022년, 2023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씩 반영 계획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1. 4. 2. ~ 2021. 4.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3533, '20. 3. 30.)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3533, '20. 3. 30.)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과-21238, '20. 4. 2.)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

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기획 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활성화 사업
3.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 활성화 사업
4. 평창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사업

5.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6. 평창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 농업인·소비자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관광사업 연계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푸드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이사, 본부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총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군수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실적 평가)** 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본부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수)** 본부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급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으로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마련

나. 추계 결과(연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3,600,000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군비)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000,000	제1회추경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군비)	통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2021년)	600,000	제1회추경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군비)	통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2022년)	1,000,000	당초예산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군비)	통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2023년)	1,000,000	당초예산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유통산업과장 전운철
연락처	(033) 330 - 130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600,000	1,000,000	1,000,000			3,600,000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출연금)	1,000,000					1,000,000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600,000	1,000,000	1,000,000			2,600,000
재원 조달		1,600,000	1,000,000	1,000,000			3,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00,000	1,000,000	1,000,000			3,600,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1,600,000	1,000,000	1,000,000			3,6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